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병원장

참 조

제 목 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 안내

1. 관련근거 :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-1209(2019.7.9)

2.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신고범위에 신속진단키트(RDT)로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된 의사환자(추정환자)를 추가하여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·시행(2019.4.30)하였습니다.

3. 이에 발열환자 진료 시 국내 위험지역(인천·경기·강원 북부)방문력 확인 후 신속진단키트검사로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 진단·치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말라리아 진단 신고기준

- 대상감염병 : 말라리아
- 신고범위 :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
-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
 - 환자 : 말라리아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
 - 의사환자 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말라리아가 의심되며,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
 - 병원체보유자 :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
-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
 - 확인진단
 - 검체(혈액)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
 - 검체(혈액)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
 - 추정진단
 - 신속진단키트에서 말라리아 특이항원 검출

끝.

대한병원협회



팀장 최명희 국장 방성민 본부장 김종윤 사무총장 김승열

시행 : 기획정책 제 2019-342 (2019.07.15)

우편번호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14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cmh@kha.or.kr